

건설산업기본법 확정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시공능력 평가기준에 포함

내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는 건설업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되었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외적인 시장개방과 대내적인 건설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건설제도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 대책」을 근간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개정의 형식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회 건교위는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게 부적합한 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사수주질서가 문란해질 경우를 대비해 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시공능력 공시제도의 객관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과 자본금 뿐만 아니라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수준도 시공능력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편집자註]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9조[건설업의 면허] 및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대등한 법률이 각각 적용되어 중복규제와 법률간의 상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관련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업법의 내용을 대폭 개편하여 그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건설산업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산업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시하고자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도 규정하였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건설업면허제도 개선

현행 건설업법은 건설업을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특수건설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통합하여 면허구조를 단순화하였으며 특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되는 업종은 일반건설업자가 중복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만이 수주할 수 있는 복합공사일지라도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주기제도는 업체수의 지나친 증가로 인한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외국건설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면허신청기간 이외에는 면허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국내업체로서도 규제완화차원에서 필요시에 수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발급하던 건설업면허의 주기와 신청기간제도를 폐지하여 97년 1월 1일부터는 수시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의 면허) ①일반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면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면허 완화로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면허 취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게 부적합한 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사수주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폭력범죄자·부도발생자·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설업면허

가 취소된 자를 결격사유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결격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행위당시의 당해법인의 대표자도 당해법인과 함께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改任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안 날로 하고 그 기간도 2월에서 3월로 연장함으로써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완화하였다.

제13조(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

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건설업자등의 신고의무등) ①일반건설업

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2개 업종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른 때에는 전제 업종에 대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받은 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중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이를 국제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인가가 있는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

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하도급제도의 개선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어 규제하고 있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를 일괄 하도급의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전문공사의 하도급이라도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발주자의 승락이 있으면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승락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락한 경우로서 승락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직불 사유로 하였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에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공능력공시제도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상한선으로서 건설업자로 하여금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시공하도록 하여 성실시공을 기하고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

그러나 PQ제,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시행으로 도급한도액제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단순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산정하여 공사수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건설업자의 공사수주활동을 도급한도액제도로 직접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 발주자는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의 특성을 참작하여 건설업자의 등급이나 군을 편성하여 공사도급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성이 큰 SOC, 다중이용시설은 당해시설의 인·허가기관이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공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시행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노동부가 제정 추진중)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도록 하였다.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건설업체의 종합능력배양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는 대체로 여러 공종

이 복합되어 있어 여러 업체가 투입되어 시공하게 되므로 공종간의 종합조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설계·발주·감리 등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발주자도 이에 대한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선진외국은 CM 또는 PM방식 등 다양한 건설생산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계·시공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턴키방식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발주자의 전문능력을 제고시키고 건설업체의 종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자만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 공사 등 대규모 복합공종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

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인하여서는 아니된다.